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316회 제2차 정례회

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
【 한실 숲속도서관 건립사업 】

검 토 보 고 서



2025. 11.

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

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【 한실 숲속도서관 건립사업 】

검 토 보 고 서

2025. 12. 1.
도시환경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
【 한실 숲속도서관 건립사업 】
- 제 출 자: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공원녹지과장)
- 제출일자: 2025. 11. 14.
- 회부일자: 2025. 11. 14.
- 검토기간: 2025. 11. 14. ~ 11. 21.

2. 제안이유

- 한실공원 내 숲속도서관 목조건축 건립을 통하여 교육 환경 및 주민 편의를 개선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건립개요

- 위 치: 달서구 대곡동 1088번지 일원
- 규 모: 부지면적 91,198.5㎡, 연면적 2,330㎡정도
- 사업기간: 2024. 10. ~ 2027. 12월
- 사 업 비: 총 2,500백만원정도(주차장특별회계)
- 사업비 세부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계	부 지 매입비	건 축 비				
		계	공사비	설계비	감리비	기타
13,000	-	13,000	10,718	569	1,034	679

나. 취득대상 현황

종류	위 치 (지번)	지목	면적(㎡)	사업비 (백만원)	비 고
건물(3층)	대곡동 1088	공원	연면적 2,330	13,000	취득

※ 토지 현황: 면적 91,198.5㎡/ 대구시 소유

다. 재원확보(안)

○ 특별교부세·교부금 최대확보 및 구비 조달

(단위: 백만원)

재원별	총사업비	연도별 확보계획(안)				비고
		기확보		향후계획		
	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	
계	13,000	500	500	6,000	6,000	
국 비	6,500	250	250	3,000	3,000	
시 비	1,500	-	250	1,250	-	
특별교부세	2,000	-	-	-	2,000	
특별교부금	1,750	-	-	1,750	-	
구 비	1,250	250	-	-	1,000	

☞ 재원별 확보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

라. 추진경과

○ 사업계획 수립: 2024. 10월

○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업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: 2025. 1.~4월

○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업사업 건축기획 용역: 2025. 2.~10월

○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: 2025. 5.~6월

○ 공공건축 심의: 2025. 8.~9월

라. 향후계획

○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: 2025. 12.~2026. 9월

- 공원조성계획 변경, 市 공유재산심의(무상사용 승인): 2025. 12.~2026. 3월
- 공사착공: 2026. 5.~8월
- 주차장 조성공사 시행: 2026. 9.~2027. 3월

4. 참고사항

- 위치도 및 현장사진 : 붙임 1
- 관계법령 : 붙임 2

5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노후된 도원도서관을 주변 자연환경이 우수한 한실공원 내 부지로 확장 이전하여 한실 숲속도서관을 건립하고자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의2에 따라 구의회에 제출한 것으로
- 본 계획의 주요내용은 2027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130억원으로 건축비 10,718백만원, 감리비 1,034백만원, 인증관련 수수료 등 679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주요시설은 어린이 서가, 열람 영역, 일반 서가, 업무 관리공간으로 구성됨.
- 재원은 사업비 130억 중 국비 65억, 시비 15억, 구비 12.5억, 특교세 20억, 특교금 17.5억으로 계획되었으며 재원확보는 진행중에 있음.
- 또한, 한실 숲속도서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산림청에서 추진 중인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의 일환으로 목조 건축물로 신축될 예정임.
- 향후 의회 의결 후 12월 건축설계공모 당선작 선정,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, 市 공유재산 무상사용 승인을 추진할 예정임.
- 따라서, 본 안건은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도서관 확충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한실공원 내 숲속 도서관을 목조건축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구민의 독서진흥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시행 시 재원확보 등 차질없는 업무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<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 >

붙임 1

위치도 및 현장사진



□ 지방자치법

제47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~ 5. (생략)
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
7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·처분
8. ~ 11. (생략)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38조(중요 재산, 공공시설의 취득·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) ① 법 제47조제1항제6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”이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·처분(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·처분은 제외한다)을 말한다.

② ~ ④ (생략)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10조의2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공유재산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 절차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5조에 따른다.

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제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공유재산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

1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
2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

② ~ ⑦ (생략)

□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

제12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

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사업계획 수립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야 한다.

③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.

1.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

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

가. 취득의 경우: 1천제곱미터

나. 처분의 경우: 2천제곱미터